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86

제출년월일: 2018년 5월 31일
제 출 자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2018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1개교와 단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초등학교 신설(안 별표 1)

서부교육지원청: 서울어울초등학교 (은평구 통일로 640)

나. 유치원 신설(안 별표 7)

강남서초교육지원청: 서울양재유치원 (서초구 바우뫼로 18길 1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[별첨 3]

1) 교육기본법 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

2)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(관장사무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 (비용추계서) [별첨 2]

다. 협 의 : 해당없음

라. 기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[별첨 1]

2) 입법예고(2018. 5. 1. ~ 5. 21.) 결과: 제출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: 해당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구분란 중 “서부교육지원청(62교)”을 “서부교육지원청(63교)”으로, 자치구명란 중 “은평구(26교)”를 “은평구(27교)”로 하며, 명칭란 중 “서울진관초등학교” 다음에 “서울어울초등학교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분	자치구명	명 칭	위 치
서부 교육지원청	은평구	서울어울초등학교	은평구 통일로 640

별표 7 구분란 중 “강남서초교육지원청(24교)”을 “강남서초교육지원청(25교)”으로, 자치구명란 중 “서초구(9교)”를 “서초구(10교)”로 하며, 명칭란 중 “서울청계숲유치원” 다음에 “서울양재유치원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분	자치구명	명 칭	위 치
강남서초 교육지원청	서초구	서울양재유치원	서초구 바우뫼로 18길 14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1】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[별표 1]

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

구분	자치구명	명칭	위 치
서부교육지원청 (62교)	은평구 (26교)	<생 략>	
		서울진관초등학교	은평구 진관4로 78-16
		〈신 설〉	

[별표 7]

유치원 명칭 및 위치

구분	자치구명	명칭	위 치
강남서초교육지원청 (24교)	서초구 (9교)	<생 략>	
		서울청계숲유치원	서초구 신원동 247
		〈신 설〉	

개 정 안

[별표 1]

초등학교 명칭 및 위치

구분	자치구명	명칭	위 치
서부교육지원청 (63교)	은평구 (27교)	<현행과 같음>	
		서울진관초등학교	은평구 진관4로 78-16
		서울어울초등학교	은평구 통일로 640

[별표 7]

유치원 명칭 및 위치

구분	자치구명	명칭	위 치
강남서초교육지원청 (25교)	서초구 (10교)	<현행과 같음>	
		서울청계숲유치원	서초구 신원동 247
		서울양재유치원	서초구 바우뫼로 18길 14

【별첨 2】

(앞쪽)

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

Ⅰ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학교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, 건축비 및 리모델링 소요비용

<교육기본법>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.

<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>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·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학교 신증설에 따른 비용

3. 비용추계의 결과 (투자예산 현황 자료 대체)

(단위 : 천원)

연번	학교급	학교명	토지매입비	시설비	합계	비고
1	초	서울어울초등학교	23,176,000	18,041,000	41,217,000	
2	유	서울양재유치원		3,999,000	3,999,000	

※ 학교신설은 시립학교 설치조례 개정 절차 전 공유재산심의, 예산심의 등을 완료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해 향후 발생하는 비용 없음 (투자예산 현황자료로 대체)

4. 재원조달 방안

- 토지매입비 : 서울시 학교용지 부담금 및 교육부 교부금 각 50%
- 시설비 : 교육부 교부금 100%

5. 덧붙이는 의견

- 별도 의견 없음

6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 주무관 유미옥 (399-9604)

Ⅱ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(예산현황 자료 대체)

【별첨 3】

관계법규

■ 교육기본법

제11조(학교 등의 설립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.

② (생 략)

[전문개정 2007.12.21.]

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20조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
1. ~ 4. (생 략)

5. 학교,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6. ~ 17. (생 략)